

시설 대관 및 운영 규정(안)

제 정 2026. 1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동구문화원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관 대상 시설) 동구문화원이 대관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시설 : 대청홀(공연장), 전시장, 다목적실, 예절교육관, 음악실, 충정재(학습강의실),
충암재(학습강의실)

2. 부대시설 : 피아노, 음향무대시설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및 냉·난방시설

제3조(대관 신청 및 허가)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문화원이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행사 30일 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시설물 사용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대관 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**【별표1】**에 근거하여 대관견적서를 첨부해 통보한다.

③ 대관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5일(은행 영업일) 이내 사용료 총액의 10%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잔액은 행사 시작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대관이 확정된다.

④ 대관 확정 후 변경 신청 시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할 때에는 **【별표2】**에 의한 시설물 대관운영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 허가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정치활동, 선거운동,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지·반대 목적의 행사
2. 종교적 포교 또는 집회 성격의 행사
3. 특정 제품의 선전·판매 등 상업적 목적의 행사
4. 음주·도박·유흥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
5. 시설 훼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행사
6.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5조(대관 기간 및 대관료) ① 시설의 사용 시간에는 설치, 리허설, 준비, 정리 및 철수 시간이 포함된다.

② 기준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기준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.

③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.

제6조(사용 허가의 취소 등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 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
3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7조(사용료 감면) ① 원장은 공공·공익 목적의 시설 사용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면제 :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청,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개최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
2. 50% 이내 감면

가. 사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

나. 동구문화원 공동주관 행사

3. 20% 이내 감면

가. 사용자가 동구문화원 임원(이사, 감사)인 경우

나. 사용자가 본 건물에 입주한 유관 단체인 경우

다. 관내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·전시 등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 면제 안내 : 제3항 나호의 규정은 2026. 8. 31.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대관 취소 및 사용료 반환)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

1. 천재지변,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.

2. 문화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, 그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.

3. 사용자가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
가. 대관 시작 60일 이상을 남기고 취소할 경우 대관 계약금(10%)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.

나. 대관 시작 60일 미만 30일 이상을 남기고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의 50%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.

※ 대관 시작 30일 미만을 남기고 취소할 경우 대관료 전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대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)① 사용자는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설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원장은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.

제10조(권리의 양도 및 전대 제한) 사용자는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손해배상 및 관리책임)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문화원의 시설과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로 관리·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그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동시에 진다.

제12조(안전교육 및 안전조치) 공연장 대관 시 무대 설치·철거, 조명·음향 장비 사용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, 원장은 공연자 또는 관계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확인, 안전 확인서 제출, 안전 수칙 고지,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(2026. 1. 27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동구문화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